

돌보는 몸들은 누가 돌봐줄까?

정지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회원

선숙씨는 30여 년간 수도권에서 경리로 일했다. 재작년 팔순을 넘긴 노모가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6개월간 재활병원에서 급성기 치료 후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셨다. 선숙씨는 고향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했다. 어머니가 재활병원에 계시는 동안 선숙씨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땀고, 가족 요양보호사가 되었다. 내 가족을 돌보는 재가요양보호사로 10개월여 일한 뒤 선숙씨는 양측 손목 수근관증후군을 진단받고 수술을 받았다. 정형외과 의사는 선숙씨의 직업이 '요양보호사'라는 말을 듣고 산재를 신청해 보라고 권유했다.

가족 요양보호사의 '업무상' 재해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일종으로, 자격증을 딴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가족을 집에서 직접 돌보는 서비스다. 가족 요양보호사가 지역의 재가방문요양센터에 가족 요양을 신청하면, 일반적인 경우 하루 60분, 월 최대 20일이 노동시간으로 인정되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돌봄의 대상이 폭력적이거나 치매, 피해망상 등 문제행동을 보일 경우 하루 90분, 월 최대 31일의 노동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가족 요양보호사의 시급은 국가에서 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재가복지센터마다 시급이 다르고, 소속된 민간 재가복지센터의 기준에 따라 급여를 받는다.

선숙씨의 경우 어머니께서 치매를 진단받아 하루 90분, 일 최대 31일의 근로를 인정받았고 이에 따라 선숙씨는 월 46.5시간에 대해 급여를 받았다. 선숙씨는 수술 후 회복 기간에 어머니를 온전히 돌볼 수 없어 요양병원으로 모셨고, 본인은 요양보호사로 같은 병원에 취직했다가 어머니께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다시 집으로 모시게 되었다.

선숙씨의 산재 최초 요양 건은 재해발생일로부터 거의 1년여가 지나서야 불승인으로 종결되었고 현재 재심청구 상태이다. 월 46.5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계산하여 해당 시간 동안의 신체 부담 누적을 평가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선숙씨의 사례는 여성에게 전가되는 가족 내 돌봄의 책임, 가족 돌봄을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돌봄 노동의 주체자에 대한 고려는 없는 가족 요양제도, 돌봄이 어려운 대상자의 경우 돌봄이 사회화되기 매우 어려운 현실, 가족 돌봄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문제와 더불어 ‘아프면 쉬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 아픈 가족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깨닫게 한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모두 돌봄에 대한 뿌리 깊은 저평가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

돌봄 노동, 돌봄하는 몸들의 값어치

일본 사회학자 우에노 치즈코는 ‘돌봄이 필요한 타자와 완벽히 공유된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돌봄이며, 그렇기에 인간의 노력으로 노동을 절약할 수 없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일반 가사와 차이가 있다고 밝힌다¹⁾. 일반 가사 역시 돌봄의 일부이기는 하나 식기세척기가 그릇을 닦고 로봇청소기가 바닥을 물청소할 수 있을지 몰라도 환자를, 아기를, 노인을 먹이고 씻기고 달래고 재우는 데 드는 시간과 노동력, 그리고 멘탈 털림은 절약할 수 없다. 그래서 돌봄이 필요한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의 하루는 온통 돌봄이다. 하루 90분은 선숙씨의 이 ‘온통 돌봄’을 전혀 반영할 수 없다.

가족 요양보호사의 돌봄은 애초에 노동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제도적으로 가족 돌봄 ‘수당’²⁾이 아닌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로서 임금받았고,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업무’라고 형식적인 이름을 붙여놓기는 했지만, 실제로 권리를 찾고자 할 때는 그저 자기 가족을 돌보는 당연한 일상 중 일부로 여겨졌다. 가족 내에서 돌봄은 ‘효’, ‘가족 사랑’, 심지어는 저출산 시대의 ‘애국’으로까지 추켜세워지면서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온정주의적 착취를 정당화한다. 그러나 상품화되지 않을 때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던 돌봄은 시장에 나오면 돌연 그 가치가 낮아지면서 제공자를 착취하게 된다. 심지어 돌봄 제공자가

1) 우에노치즈코. 2024. 돌봄의 사회학. 오월의봄.

2) 경기도는 2024년 6월부터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6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을 시행하고 있다.

가족일 경우에는 그 값이 가장 내려가 실제로는 24시간 주 7일을 함께 하지만 제대로 계산되지도 않는 기이한 모습이 되고 만다.

좋은 돌봄은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는 에스핑 앤더슨이 설명한 개념으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직업, 수입, 일반적 복지를 상실한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노동에서 손을 뗄 수 있게 되는 것³⁾이며 탈상품화가 높을수록 선진화된 복지국가를 의미한다. 돌봄의 영역에서 탈상품화를 말하자면, 어떤 노동자가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 노동시장을 이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복지국가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논의 중 하나는 ‘돌봄을 누가 할 것인가’이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때문에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돌봄 노동자를 구할 수 있지만 결국 노동자를 제공하는 기관은 민간 기관들이다. 국가 주도로 탈상품화를 지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처럼 보이지만 결국 민간 시장에서 노동자를 구하게 되는 한편, 가족 요양보호사라는 이름으로 가족 돌봄을 허용하면서 결국 그 돌봄의 주체가 가족이 되는 경우가 많다. 또, 민간 시장에서는 수가 구조 특성상 높은 수준의 돌봄을 요구하는 중증 등급의 노인, 환자보다 경증 등급의 노인, 환자를 받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오히려 돌보기 어렵고 힘든 돌봄대상일수록 가족에게 떠넘겨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서울시는 지역사회 기반 공공돌봄의 거점이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해산시키면서 다시 한번 돌봄의 주체를 시장으로, 가족으로 전가했다. 돌보는 사람에게 좋은 돌봄이 돌봄을 받는 사람에게도 좋은 돌봄일 수밖에 없다. 돌보는 몸들을 지우지 않는 좋은 돌봄을 공공의 영역에서, 어떻게 전개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써 내려가야 할 때이다. **알터**



▲ 가족요양돌봄을 검색하면 민간업체들의 광고가 가장 먼저 나온다.
사진 : 대교뉴이프 홈페이지 갈무리

3) G. 에스핑 앤더슨. 2012. 복지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 성균관대학교 출판부.